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**455** 발의연월일: 2009. 3. 6. 발 의 자: 김인식 의원 외 6인

1. 제안이유

제1차 정례회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에서 6월 넷째주 화요일 로 개정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지방자치법 시행령, 지방재정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기 타

(1)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대전광역시의회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1호중 "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"을 "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	현	ð	행		개	정	안	
 2. 	<u>화요일에</u> 집	회는 매년 회한다. 다 년도에는 의	7월 둘째주 만, 총선거가 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.	 2. (현행			<u>6</u> 월	

관 계 법 령

* 지방자치법

제44조 (정례회)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<u>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∦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4조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<u>매년 6월·7월 중에</u>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수 있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-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- ③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∦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59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서 명

의 원 명	서명·날인	нJ	31
No 2/2 M	W		
出行以	all mello		
そと動	mitat		
13 21 2	700		
2 od M	800		
ahous	The		
과 영고,	March		
The Street Company of the Company of			La transfer de la companya della companya de la companya della com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사보고서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

I. 심사경과

- 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3. 5. 김인식 의원 외 6인
- 2. 회 부 일 자 : 2009. 3. 10.
- 3. 상 정 일 자 : 제180회 임시회
 - 제1차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 (2009. 3. 11):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·의결

Ⅱ. 제 안설 명 요 지 (제안설명자 : 김인식 의원)

1. 제안이유

제1차 정례회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에서 6월 넷째주 화요일로 개정(안 제4조)

Ⅲ. 검토의견 (보고자 : 운영전문위원 안문환)

-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에 있어 주요 안건이 결산 승인인 점을 고려할 때,
- 집회일을 앞당겨 조정할 경우, 안건제출 기일과 안건 검토 등의 기간 확보 문제가 대두되는데
- 최근 타시도 광역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추세이고 7월 혹서기 임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의 결산작업,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등을 조기시행 하도록 사전협의하고, 결산서 제출시기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,
- 우리 시의회도 6월중으로 집회일을 조정하되,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6월 넷째주 화요일로 조정함이효율적이라 판단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.

Ⅳ. 질의 및 토론요지 : 생 략

V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VI. 기 타 필 요 한 사 항 : 없 음